

○ 국토교통부고시제2023-482호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 및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제20조에 따라 “2023년도 건물·수송·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 지정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57호 및 397호)” 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
2023년 08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2023년도 건물·교통·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

| 관보내용 | 변경 | 비고 |
|---|------|------|
| - 관리업체 : (주)케이티에스테이트 - 업종 : 건물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, 17층(대치동) - 적용기준 : 제2호 | <삭제> | 지정취소 |

□ 문의처

○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: 044-201-3263